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8월 29일, 최기상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8월 3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

11. 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 2. 25.)

상정, 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 12. 8.)

상정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 12. 1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

12. 10.)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최기상의원)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허위 아닌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하여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이른바 ‘미투운동’, 내부 공익신고 등을 막기 위해 가해자나 제3자가 피해자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고발하여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음. 미국, 영국, 독일 등 여러 선진국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07조제1항에 대하여 ‘병력·성적 지향·가정사 등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적시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비범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음(헌재 2021. 2. 25. 2017헌마1113, 재판관 4인의 반대의견).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하는 한편, 현행법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 중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관한 사항도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로 제한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 및 제70조제1항·제3항·제4항).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취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피해의 중대성과 사회적 영향,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별 가능성,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대한 개정 논의경과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 현)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